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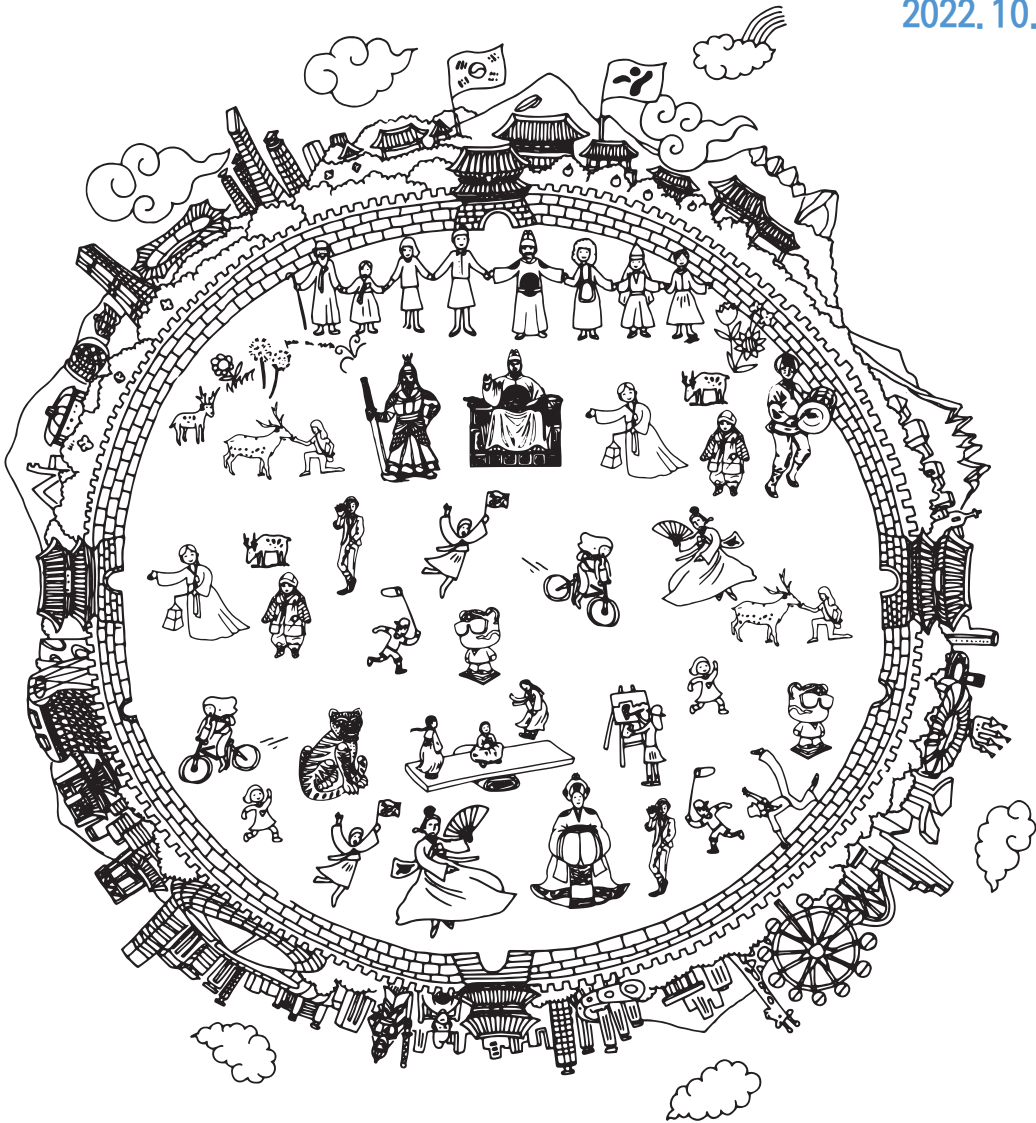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21호
2022. 10. 18.(화)



목 차

◆ 자치법규

[조 레]

제8514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514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이상 부진평가” 를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 심사·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제3호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나.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8명 이내

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포함)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출하자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는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목을 “갱신허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허가” 를 각각 “갱신허가” 로, “60일” 을 “3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허가” 를 “갱신허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8조” 를 “제27조” 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재지정에 따른 지정조건(부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제4조의2)

－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 구성, 임기 및 연임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의 한도를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 범위로 조정함(제8조제1항)

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현행화

－ 도매법인 등 평가에서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는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제4조)

－ 중도매업 허가·신고 시 도매시장법인 경우 규정 삭제(제12조 제6항)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재허가→갱신허가)와 갱신허가 신청기한(60일→30일) 정비(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 시 주무부장관 승인 규정 삭제 및 특례 적용 범위 조정(제28조제3항)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